

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50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. 12. 18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5년 5월 19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11월 6일 이현찬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각각 5월 26일과 11월 11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,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
-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무주택 세대주”를 “무주택 세대구성원”으로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- “무주택 세대주”를 “무주택 세대구성원”으로 함(안 제2조제2호다목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여하기”를 “이바지하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다목 중 “무주택 세대주로서”를 “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“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번만”으로 하고, “잔여기간으로”를 “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2회”를 “두 차례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청취하거나”를 “듣거나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비치하여야”를 “보관하여야”로 한다.

제18조제4항 중 “수탁기관은”을 “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,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통보하고”를 “알리고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이바지하기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주거약자 등"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,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.</p> <p>가.~나. (생 략)</p> <p>다. <u>무주택 세대주로서</u>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</p> <p>라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~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구성)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<u>시의회</u> 의장이 추천하는 <u>시의원</u> 3명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9조(구성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----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임기)</p> <p>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<u>잔여기간으로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임기)</p> <p>① ----- -- <u>한 번만</u> -----. ----- ----- --- <u>남은 기간으로</u> 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회의 등)</p> <p>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<u>2회</u>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회의 등)</p> <p>① ----- ----- <u>두</u> <u>차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<u>청취하거나</u>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관계부서의 협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듣거나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<u>비치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14조(회의록) ----- ----- <u>보관하여야</u> ----.</p>

<p>제18조(관리 및 운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<u>수탁기관</u>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 4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(관리 및 운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</u>은 ----- ----- 받아야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지도 감독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<u>통보하고</u>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제19조(지도 감독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알리고</u> ----- -----.</p>
<p>제2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2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